**그린뉴딜 태양광 발전사업**

**관리운영재위수탁 계약서**

**한화에너지 주식회사**

**- 수탁자겸재위탁자 -**

**주식회사 센트럴이엔지**

**- 재수탁자 –**

**2021년 9월 28일**

목 차

[**제 1 조** **(정 의)** 2](#_Toc81314264)

[**제 2 조** **(업무의 재위탁)** 4](#_Toc81314265)

[**제 3 조** **(재수탁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5](#_Toc81314266)

[**제 4 조** **(재수탁자의 관리운영 관련 준수사항)** 5](#_Toc81314267)

[**제 5 조** **(추가 계약의 체결 및 문서의 보관)** 5](#_Toc81314268)

[**제 6 조** **(재위탁자의 업무협조 및 자문기관의 선임)** 5](#_Toc81314269)

[**제 7 조** **(관리운영수수료 등)** 6](#_Toc81314270)

[**제 8 조** **(진술 및 보장)** 8](#_Toc81314271)

[**제 9 조** **(연체이자)** 8](#_Toc81314272)

[**제 10 조** **(민원)** 9](#_Toc81314273)

[**제 11 조** **(손해배상)** 9](#_Toc81314274)

[**제 12 조** **(불가항력사유 발생시의 처리)** 10](#_Toc81314275)

[**제 13 조** **(계약의 해지 및 종료)** 10](#_Toc81314276)

[**제 14 조** **(기타)** 15](#_Toc81314277)

부록 및 별첨

부록 I 개별이건사업시설 상세 내역

부록 II 개별이건사업시설의 기간별 기준매출액

부록 III 운영지침서

부록 Ⅳ 대수선 기준

부록 V 대출약정금 및 대수선비적립금 내역

별첨 가 관리운영위수탁계약

**관리운영재위수탁계약서**

이 관리운영재위수탁계약(서)(이하 “이계약(서)”)은 2021년 9월 28일 아래 당사자들간에 체결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케이티앤지 세종타워 4층)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한화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수탁자겸재위탁자로서 문맥에 따라 “재위탁자” 또는 “수탁자”)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2, 10층(대치동, 홍우빌딩)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센트럴이엔지**(이하 “재수탁자”)

(이하 수탁자겸재위탁자 및 재수탁자를 개별적으로 “당사자”, 총칭하여 “당사자들”)

**전 문**

A. 부록 I에 기재된 위탁자(개별적으로 “개별위탁자”, 총칭하여 “위탁자”)는 부록 I에 기재된 사업부지 일원(개별적으로 “개별이건사업부지”, 총칭하여 “이건사업부지”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부록 I에 기재된 바와 같음)에 건설된(되는) 신재생에너지법(아래에 정의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 태양광발전소 및 그 부속시설(개별적으로 “개별이건사업시설”, 총칭하여 “이건사업시설”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부록 I에 기재된 바와 같음)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고 공급인증서(아래에 정의됨)를 판매하는 등의 사업(개별적으로 “개별이건사업”, 총칭하여 “이건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B. 재위탁자는 관리운영위수탁계약(제1조에 정의됨)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이건사업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업무를 위탁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며, 이에 재수탁자에게 이건사업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업무를 이계약의 제조건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고, 이에 따라 재수탁자는 재위탁자를 위하여 이건사업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C. 재수탁자는 이계약서 체결일과 동시에 수탁자의 대리인으로서 수탁자를 위하여 개별위탁자와 사이에 개별이건사업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의 위탁에 관한 각 개별관리운영위수탁계약(제1조에 정의됨)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 **제 1 조 (정 의)**

제1항 정의

위에서 정의된 용어 외에 이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문맥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용어는 단수 및 복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계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대출약정서(아래 정의됨) 및 관리운영위수탁계약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이계약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계약기간”은 대출약정서상 최초인출일로부터 기산하여 (개별)대출약정서상 대출원리금(연체이자 포함)이 전액 상환되는 날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은 당사자들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공급인증서가중치”라 함은 이건사업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한 전력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가중치를 말하며, 이계약상 공급인증서가중치는 부록 I ‘개별이건사업시설 상세 내역’ 중 각 개별이건사업시설의 공급인증서가중치 기재 수치를 적용하되, 해당 개별이건사업시설의 상업운전 개시 후 확정된 수치가 이와 다를 경우 최종 확정되는 수치로 한다.

“공급인증서 고정단가”라 함은 공급인증서매매계약에 따른 고정가격 거래 단가로 공급인증서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SMP + 1ㆍREC」 또는 「SMP + 1ㆍREC × 공급인증서가중치」방식으로 산정된 공급인증서 단가를 kWh 단위로 환산한 것을 말하며, 이계약상 개별이건사업시설에 적용되는 공급인증서 고정단가는 부록 I ‘개별이건사업시설 상세 내역’ 중 각 개별이건사업시설의 공급인증서 고정단가 기재 내용에 따른다.

“관리운영위수탁계약”은 개별위탁자가 개별이건사업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이계약 체결일 즈음 개별위탁자, 수탁자 및 재수탁자 사이에 체결된(되는) 관리운영위수탁계약을 말하며, 개별적으로 “개별관리운영위수탁계약”, 총칭하여 “관리운영위수탁계약”이라 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위수탁계약은 실질적으로 “별첨 가”의 양식과 내용으로 작성, 체결되어야 한다.

“대출약정서”는 위탁자가 이건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계약체결일 즈음 위탁자를 차주로 하여 대주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이하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 자금재조달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를 말하며, 개별 대출약정서상 대출약정금은 부록 V에 기재된 바와 같다.

“운영기간”은 개별이건사업시설의 운영개시일(대출약정서상 최초인출일 이전에 개별이건사업시설의 운영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최초인출일)부터 개별 대출약정상 대출원리금(연체이자 포함)이 전액 상환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최소유지적립금”은 대수선비적립금 중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수수료 지급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금원으로서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한 이건사업시설에 대한 대수선을 위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수선비적립계좌에 적립 및 유지되어야 할 최소한의 대수선비적립금액을 말하며, 개별위탁자별 최소유지적립금은 부록 V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2항 해석

이계약에서 관리운영위수탁계약의 어느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 당해 준용 조항 중 문맥에 따라 “수탁자”는 “재수탁자”로, “위탁”은 “재위탁”으로, “위탁자”는 “재위탁자”로 보되, 문맥상 허용되지 않거나 위탁자의 권리, 의무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단의 규정 외에 이계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리운영위수탁계약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제 2 조 (업무의 재위탁)**

제1항 재위탁자는 계약기간 동안, 관리운영위수탁계약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재수탁자에게 재위탁한다. 또한 문맥상 허용되지 않거나 이계약에 따라 준용되는 관리운영위수탁계약 조항과의 해석상 충돌되거나 또는 이계약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의 권리, 의무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한, 관리운영위수탁계약 제3조,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2조에서 규정한 사항도 재위탁업무의 범위에 포함한다. 재수탁자가 이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를 위하여 재위탁업무를 수행한 행위나 그 결과는 관리운영위수탁계약상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한 행위나 그 결과로 간주하며, 이에 수탁자는 재수탁자의 위 행위나 그 결과에 대하여 관리운영위수탁계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제2항 관리운영위수탁계약 제2조 제2항 내지 제6항은 이계약에 준용한다.

## **제 3 조 (재수탁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관리운영위수탁계약 제3조는 이계약에 준용한다.

## **제 4 조 (재수탁자의 관리운영 관련 준수사항)**

재수탁자는 계약기간 동안 이건사업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이행할 의무(이하 “관리운영의무”)를 부담한다. 재수탁자의 재위탁자에 대한 발전시간보장과 관련하여 해당 개별이건사업시설에 대한 연도별 보장발전량의 상세 내역은 부록II 기재와 같다.

그 외 구체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리운영위수탁계약 제4조를 준용한다.

## **제 5 조 (추가 계약의 체결 및 문서의 보관)**

관리운영위수탁계약 제5조는 이계약에 준용한다.

## **제 6 조 (재위탁자의 업무협조 및 자문기관의 선임)**

관리운영위수탁계약 제6조는 이계약에 준용한다.

## **제 7 조 (관리운영수수료 등)**

재수탁자가 이계약에 따른 재수탁자의 제반 의무를 적법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위탁자는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수탁자에게 관리운영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항 이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재위탁자는 운영기간 중 재수탁자의 이계약 제2조 제1항에 따라 재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따른 관리운영수수료로 매 사업연도별로 관리운영수수료(개별이건사업시설별 재수탁자의 수익분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수수료를 말한다)를 지급하되, 분기별로 분할 지급하기로 하며, 분기별 관리운영수수료를 해당 분기에 도래하는 마지막 영업일 익일에 재수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재위탁자는, (i) 어느 개별이건사업시설의 운영기간이 분기 초일에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기간의 초일부터 분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ii) 어느 개별이건사업시설의 운영기간 종료일이 분기 말일에 종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기 초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각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위 분기별로 분할한 관리운영수수료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초일과 말일을 모두 산입하며, 일할 계산은 해당 기간에 속한 날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상기의 관리운영수수료에는 위탁자의 전기료, 대수선비, 전기안전관리자 및 보조원의 급여, 위탁자의 제세공과금, 보험료, 수탁자의 수익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2항 내지 제4항

관리운영위수탁계약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는 이계약에 준용한다. 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관리운영위수탁계약 제7조 제4항의 준용에 따라, 이계약에 따라 재수탁자에게 지급될 제반 수수료, 비용은 대출약정서에 따른 자금집행의 순서에 따라 그 지급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양해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위 자금집행의 순서를 비롯하여 대출약정상 관리운영수수료, 비용의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된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는 이자(제9조 소정의 연체이자를 포함함)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고, 재수탁자는 이와 관련하여 재위탁자를 상대로 일체의 압류, 가압류, 소송 제기 등 일체의 강제집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제5항 대수선비

(가) 대수선비의 적립

관리운영위수탁계약 제7조 제5항 (가)호에 따라 개별이건사업시설에 대한 대수선비적립금{대출약정서상 최초인출일에 대수선비적립금 합계 금이십구억칠백팔만일천삼백육십이원(₩2,907,081,362)은 부록 V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개별위탁자별 대수선비적립계좌에 분할하여 예치, 적립됨}은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개별이건사업시설에 대한 대수선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대수선비 지급액은 지급 당시 해당 개별위탁자의 대수선비적립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이건사업시설에 대한 대수선비적립금은 대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리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개별위탁자별 최소유지적립금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관리운영위수탁계약상 관리운영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개별위탁자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개별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수수료(본 항에서는 수탁자의 수익분을 말하며, 개별위탁자가 이를 지급할 경우 재수탁자의 수익분 지급 지연에도 불구하고 이계약 제13조 제3항 제1호 제1목에 정한 이계약의 해지사유로서 관리운영수수료의 미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급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별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해당 미지급된 재수탁자의 수익분에 대한 수탁자의 지급의무를 자동 승계하되(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부연하면, 위 자동 승계 시 해당 미지급된 재수탁자의 수익분에 대한 수탁자의 지급의무는 없다), 재수탁자의 수익분의 지급 지연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며(단, 연체이자의 부담 면제가 관련 법령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위탁자가 해당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재수탁자가 개별위탁자에 대해 가지는 해당 연체이자의 권리는 대주가 개별위탁자에 대해 가지는 금융관련서류상의 모든 권리에 대해 후순위(조건)에 해당하며, 재수탁자는 개별위탁자의 권리에 우선하여 개별위탁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없다), , 재수탁자는 개별위탁자의 자금이 부족하지 않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경우에만 개별위탁자로부터 해당 미지급된 재수탁자의 수익분(연체이자 포함)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나) 대수선비의 지급

관리운영위수탁계약 제7조 제5항 (나)호는 이계약에 준용한다.

## **제 8 조 (진술 및 보장)**

재수탁자의 진술 및 보장에 관하여는, 관리운영위수탁계약 제8조를 준용한다.

## **제 9 조 (연체이자)**

연체이자에 관하여는, 관리운영위수탁계약 제9조를 준용한다.

## **제 10 조 (민원)**

민원에 관하여는, 관리운영위수탁계약 제10조를 준용한다.

## **제 11 조 (손해배상)**

제1항 재수탁자는 본인이 직접 또는 재수탁자의 임∙직원이나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계약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재수탁자가 이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거래서류를 준수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포함) 그로 인하여 재위탁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재수탁자가 이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거래서류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위탁자에게 거래서류를 위반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재위탁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도 포함함)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항 이계약상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수탁자는 이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재수탁자의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 이건사업의 거래서류 등으로부터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책임 및 손해로부터 위탁자 및 재위탁자를 면책시켜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위탁자 및 재위탁자가 제3자에게 채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거나 비용 등을 지급하여 위탁자 및 재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 및 재위탁자에게 이러한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3항 재위탁자는 본인이 직접 또는 재위탁자의 임•직원이나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계약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재수탁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항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이계약에 규정된 상대방 당사자의 권리(이계약의 해지권 포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항 이계약상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책 당사자는 해지 사유 또는 해지로 인해 위탁자 및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되거나 거래서류상의 위탁자의 책임 또는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는 계약해지를 이유로 귀책 당사자의 본 조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제 12 조 (불가항력사유 발생시의 처리)**

불가항력사유 발생시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리운영위수탁계약 제12조를 준용한다.

## **제 13 조 (계약의 해지 및 종료)**

제1항 재위탁자는 재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어느 개별이건사업시설과 관련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이건사업시설과 관련한 이계약만을 부분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계약을 전부 해지할 수는 없다.

1. 재수탁자가 이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이계약에 따른 재수탁자의 진술 및 보장 내용이 중대한 점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점에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다만, 재위탁자가 그 위반이 시정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재위탁자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통지 받은 후에도 삼십(3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이계약 제4조에 정한 발전시간보장의무, 최저시스템효율유지의무 또는 각 자금보충의무 위반은 재수탁자가 이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유에 해당함)
2. 재수탁자에게 다음의 사유(이하 “파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재수탁자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파산, 회생절차, 또는 협조융자, 부도유예, 채무재조정, 사적 화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의 기업구조조정절차 또는 위 절차 등과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때;
4. 재수탁자가 이러한 절차를 위한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관리인 등 직무수행자의 선임을 신청하거나 그 선임에 동의한 때;
5. 제3자가 재수탁자에 대하여 위에 기재된 절차의 개시 신청 또는 직무수행자의 선임을 신청하고 그 신청이 육십(60)일 이내에 기각 또는 각하되지 않은 때;
6. 재수탁자에 대하여 해산 또는 청산의 결의가 있거나, 법원에 그 해산 또는 청산을 위한 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
7. 재수탁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된 때; 또는
8. 재수탁자가 제세공과금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발행의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된 때.
9. 위탁자가 발전사업자 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적법, 유효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상실할 경우
10. 재수탁자가 이계약 또는 자신이 당사자인 거래서류를 위반하고 그 위반이 이건사업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1. 제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사업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의 개시를 삼십(30)일 이상 지연하거나 삼십(30)일 이상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12. 기타 위 각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건사업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13.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이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
14. 관리운영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제2항 재위탁자의 해지사유 통지 이후의 조치

1. 재위탁자가 본 조 제1항에 따라 이계약의 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재위탁자는 거래서류를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재수탁자를 대신하여 이건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할 대체재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재수탁자는 재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체재수탁자에게 이계약에 따라 수탁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 기타 자료들을 신속하게 이전하여야 하며, 이전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게 되는 시점까지 재수탁자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전을 받은 자에게 협조하는 등으로 업무이전에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항 재수탁자의 계약해지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어느 개별이건사업시설과 관련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이건사업시설과 관련한 이계약만을 부분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계약을 전부 해지할 수는 없다.
   1. 재위탁자가 재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운영수수료의 지급을 4회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음으로써(이와 같은 미지급이 연속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관리운영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동 의무불이행에 관한 통지를 수령한 이후에도 의무불이행 상태가 삼십(30)일 이상 계속될 때
   2. 재위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관리운영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
   3. 재위탁자가 이계약 또는 위탁자가 당사자인 거래서류를 위반하거나 위반되게 하고 그 위반이 이건사업시설의 관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기타 위 각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건사업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이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
   6. 관리운영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7. 재위탁자에게 파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3조 제3항의 각호에 의하여 이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재위탁자는 지체없이 재수탁자에게 관리운영수수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또한 재수탁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재위탁자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항 재수탁자의 수탁자 지위 자동승계

관리운영위수탁계약 제13조 제4항은 이계약에 준용한다. 단, 위 준용 조항에 따라 기존수탁자가 수탁자지위승계일에 관리운영위수탁계약상 수탁자의 지위에서 탈퇴되고 기존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이계약은 수탁자와 재수탁자 간 별도의 서면 통지 없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하며, 이계약 종료에 따른 조치는 재수탁자가 수탁자지위승계에 따라 수탁자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정적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래 제5항에 따른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이 경우 제5항의 적용에 있어 제5항에 기재된 “재위탁자”는 “재수탁자”를, 제5항에 기재된 “재수탁자”는 “재위탁자”를 각 말한다.

제5항 계약 종료시의 조치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 등 사유를 불문하고 이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재수탁자는 지체없이 재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재위탁자는 재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관리운영수수료 등이 있는 경우, 본 항에 따른 재수탁자의 의무 이행과 동시에 이를 지급한다. 이 경우 아래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계약 종료에 대하여 책임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1. 아래 3.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수탁자는 이건사업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과 관련이 없는 재수탁자의 설비, 물품과 인원을 이건사업시설로부터 철수시키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가능한 상태로 계약기간 중 설치, 취득한 설비, 물품 등을 포함한 이건사업시설을 재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건사업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재수탁자가 보유하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및 그에 따른 정보의 이용권을 재위탁자에게 부여한다.
2. 재위탁자는 재수탁자로부터 이건사업시설을 인도받기 위하여 이를 검사하고,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수탁자는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보수나 대체를 하고 재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수탁자는 재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재위탁자 또는 재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계약에 따라 수탁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 기타 자료들을 신속하게 이전하여야 하며, 이전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게 되는 시점까지 재수탁자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전을 받은 자에게 협조하는 등으로 업무이전에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4. 재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재수탁자는 하도급계약 및 기타 이건사업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재수탁자가 체결한 계약을 재위탁자 또는 재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재위탁자가 이건사업시설 및 사업부지에 있는 시설, 설비, 기계, 기구, 도구, 소모품, 기타 물품을 조사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이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전에 발생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이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단, 당사자간 서면 합의한 경우 합의한 시점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 **제 14 조 (기타)**

제1항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그리고 이계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삼(3)년 동안은 이계약의 조건과 이계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1. 다른 당사자들 또는 그 계열회사들의 과실 없이 그 정보가 이미 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거나 공지의 사실로 전환된 경우
2. 그 정보가 어느 당사자 또는 그 계열회사에게 알려지거나 공개되기 이전에 그 당사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이미 그 정보를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그 공개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 제3자에 의하여 어느 당사자 또는 계열회사에게 적법하게 공개 된 경우
4. 당사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문서화한 경우
5. 해당 정보의 공개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경우
6. 해당 정보의 공개가 해당 당사자의 법률자문 혹은 금융자문을 위한 경우

제2항 통지

이계약서상의 최고 또는 통지는 서면으로 다음의 주소지 또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로써 지정하는 기타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인편 또는 우편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팩스,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재위탁자에게: 한화에너지 주식회사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케이티엔지 세종타워 4층)

참 조: O&M 사업팀 김대중 과장

팩시밀리: 044-850-3519

전 화: 044-850-3588

이 메 일: [daejoong.kim@hanwha.com](mailto:daejoong.kim@hanwha.com)

재수탁자에게: 주식회사 센트럴이엔지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2, 10층(대치동, 홍우빌딩)

참 조: 전략기획실 정현 실장

팩시밀리: 02-556-1502

전 화: 02-556-1504

이 메 일: [richard@ctreng.com](mailto:richard@ctreng.com)

모든 통지는 인편으로 교부될 경우에는 그 교부일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일에,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에 대한 적절한 확인이 있는 경우 발송한 때에, 각 수령된 것으로 본다.

제3항 양도

당사자들은 이계약상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제4항 지적재산권

재수탁자 또는 그 임∙직원이 이계약상 의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는 경우, 이는 재수탁자의 소유로 한다. 단, 재수탁자는 재위탁자나 새로운 재위탁자 또는 재수탁자의 승계인이 이건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권리를 부여하며, 그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한다.

제5항 효력발생

이계약은 이계약서상에 그 체결일로 명시된 일자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항 준거법

이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7항 분쟁의 해결

이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자들간에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당사자들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이나 이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 소송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

제8항 상계 및 공제

(가) 재수탁자가 재위탁자에 대하여 이계약에 따른 의무(금원 지급의무를 포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위탁자는 해당 의무 이행시까지 이계약에 따라 재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관리운영수수료 전액의 지급을 별도의 지연이자 발생 없이 유보하거나, 이계약에 따라 재위탁자가 재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관리운영수수료에서 해당 금원 상당액을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다.

(나) 위 (가)호의 규정을 해함이 없이, 재위탁자는 재수탁자가 재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제반 금원(재수탁자의 재위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채무를 포함함)을 재위탁자가 재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제반 금원(이계약에 따라 재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관리운영수수료를 포함함)에서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다.

제9항 계약의 수정

이계약은 거래서류의 변경 또는 그 해석의 변경이나 다른 원인으로 이계약의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변경하기로 하되, 그 변경은 당사자 사이의 서면합의에 의하기로 한다.

제10항 해석

1. 이계약에서 모든 계약, 약정, 협약 및 문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규정 등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변경 및 이를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이계약에서 달리 규율하지 아니하는 한, 위탁자, 수탁자, 대주, 대리금융기관, 기타 이계약에서 언급된 자는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3. 이계약의 어느 조항과 관리운영위수탁계약의 어느 조항의 내용이나 해석상 충돌이 있을 경우 관리운영위수탁계약의 조항이 우선한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다음 장에)*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계약의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권한 있는 자로 하여금 이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한 후 재위탁자와 재수탁자가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재 위 탁 자** : **한화에너지 주식회사**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케이티앤지 세종타워 4층)

대표이사 정인섭

\_\_\_\_\_\_\_\_\_\_\_\_\_\_\_\_\_\_\_\_\_\_\_

직위 :

성명 :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계약의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권한 있는 자로 하여금 이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한 후 재위탁자와 재수탁자가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재 수 탁 자 : 주식회사 센트럴이엔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2, 10층(홍우빌딩)

대표자 사내이사 정 재 건

\_\_\_\_\_\_\_\_\_\_\_\_\_\_\_\_\_\_\_\_\_\_\_

직위 :

성명 :

부록 I

**개별이건사업시설 상세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발전사업자  (위탁자) | 개별이건사업시설 주1 | 설비용량 주2  (KW) | 공급인증서 | |
| 고정단가주3 | 가중치 주2 |
| 1 |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 우송 태양광발전소 | 765.90 | 179,987 | 1.026 |
| 예리 태양광발전소 | 797.04 | 156,491 | 1.025 |
| 2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6호㈜ | 안동1호망호리 태양광발전소 | 938.08 | 158,000\* | 1.021 |
| 3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0호㈜ | 산청하이일호 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 933.12 | 180,620 | 1.021 |
| 4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1호㈜ | 산청하이이호 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 933.12 | 180,620 | 1.021 |
| 5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2호㈜ | 산청하이오호 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 933.30 | 180,620 | 1.021 |
| 6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3호㈜ | 산청하이육호 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 933.30 | 180,620 | 1.021 |
| 7 | 센트럴태양광발전소4호㈜ | ㈜현대태양광 | 748.66 | 141,300 | 1.026 |
| 정선하늘5호 태양광발전소 | 903.78 | 141,106 | 1.022 |
| 8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4호㈜ | 금성 태양광발전소 | 925.45 | 151,046 | 1.021 |
| 9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5호㈜ | ㈜혜성에너지 | 997.56 | 160,000\* | 1.020 |
| 10 | ㈜아침태양광6호 | 아침태양광6호 태양광발전소 | 1,603.80 | 131,500 | 1.012 |
| 11 | 센트럴태양광발전소5호㈜ | 정선하늘6호 태양광발전소 | 918.00 | 141,050 | 1.021 |
| 12 | 센트럴태양광발전소6호 주식회사 | 소나무1 태양광발전소 | 947.70 | 141,001 | 1.020 |
| 13 | 소나무2 태양광발전소  [센트럴태양광발전소19호㈜로 변경(발전사업양수)예정] | 소나무2 태양광발전소 | 802.12 | 134,968 | 1.022 |
| 14 | ㈜다랑쉬태양광 | 다랑쉬 태양광발전소 | 965.79 | 160,530 | 1.021 |
| 15 | 센트럴태양광발전소1호㈜ | 황제태양광발전소 | 496.02 | 135,760 | 1.040 |
| 황제1태양광발전소 | 496.02 | 135,760 | 1.040 |
| 16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호㈜ | 대길태양광발전소 | 496.02 | 135,760 | 1.040 |
| 대길2태양광발전소 | 496.02 | 135,760 | 1.040 |
| 17 | ㈜도화 | 도화 태양광발전소 | 992.16 | 134,880 | 1.020 |
| 18 | ㈜지보에너지 | 지보 태양광발전소 | 492.66 | 135,760 | 1.040 |
| 19 | ㈜보문에너지 | 주식회사 보문에너지 | 991.62 | 134,880 | 1.020 |
| 20 | 솔라다이렉트㈜ | 솔라다이렉트1호 태양광발전소 | 217.56 | 138,049 | 1.092 |
| 21 | 채움쏠라㈜ | 채움쏠라1호 태양광발전소 | 990.36 | 134,880 | 1.020 |
| 22 | 피씨솔라㈜ | 평창회동1호 태양광발전소 | 999.6 | 134,880 | 1.020 |
| 23 | 회동에너지㈜ | 회동에너지1호 태양광발전소 | 656.88 | 135,340 | 1.030 |
| 24 | 제이에이치에너지㈜ | 제이에이치에너지2호 태양광발전소 | 325.50 | 136,685 | 1.061 |
| 제이에이치에너지1호 태양광발전소 | 756.66 | 135,144 | 1.026 |
| 25 | 대성쏠라㈜ | 대성쏠라 태양광발전소 | 999.60 | 134,880 | 1.020 |
| 26 | 더드림에너지㈜ | 더드림에너지 태양광발전소 | 766.08 | 135,144 | 1.026 |
| 27 | ㈜제이씨엠에너지 | 제이씨엠에너지 태양광발전소 | 766.08 | 135,144 | 1.026 |
| 28 | 비오엠쏠라㈜ | 비오엠쏠라 태양광발전소 | 999.60 | 134,880 | 1.020 |
| 29 | 우성에너지㈜ | 우성에너지 태양광발전소 | 656.88 | 135,320 | 1.030 |
| 30 | 강원발전㈜ | 강원발전 태양광발전소 | 2,993.76 | 131,500 | 1.006 |
| 31 | 에스발전㈜ | 에스발전 태양광발전소 | 2,993.76 | 131,500 | 1.006 |
| 32 | 케이발전㈜ | 케이발전 태양광발전소 | 2,993.76 | 131,500 | 1.006 |
| 33 | 영동발전㈜ | 영동발전 태양광발전소 | 997.92 | 131,500 | 1.020 |
| 34 | 솔라나인㈜ | 길탕1호 태양광발전소 | 2,004.48 | 143,526 | 1.009 |
| 35 | 솔라원㈜ | 길탕2호 태양광발전소 | 2,004.48 | 143,477 | 1.009 |

* 주1 : 위탁자의 서면 통지로, (i) 추가된 발전소를 포함하고(단, 발전소를 추가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전 협의가 필요함.) (ii) 제외된 발전소를 제외한다.

(단, 부록 1 ‘개별이건사업시설 상세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발전소라고 할지라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이 위탁자와 수탁자 간 상호 합의한 기간 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될 가능성이 희박한 발전소의 경우 관리운영 대상내역에서 제외된다.)

* 주2 : 건설중 발전소의 경우 공사 준공 후 실제 설비용량 및 (예상)가중치가 변동될 수 있음.
* 주3 : 「가중치」가 부기된 발전소의 경우 「SMP + 1ㆍREC × 공급인증서가중치」 방식의 계약에 의한 단가(원)를 의미하되, 상기 표 2번, 9번 발전소의 경우 「SMP + 1ㆍREC」 방식의 계약에 의한 단가(원)를 의미함.

부록 II

**개별이건사업시설의 기간별 기준매출액**

관리운영위수탁계약상 부록 II 기간별 기준매출액을 준용한다.

부록 III

**운영지침서**

관리운영위수탁계약상 부록 III 운영지침서를 준용한다.

부록 IV

**대수선 기준**

관리운영위수탁계약상 부록 IV 대수선기준을 준용한다.

부록 V

|  |  |  |  |  |  |
| --- | --- | --- | --- | --- | --- |
|  | 발전사업자  (위탁자) | 개별이건사업시설 | 대출약정금  (백만원) | 대수선비  적립금  (백만원) | 최소유지  적립금  (백만원) |
|  |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 우송태양광발전소 | 3,662.0 | 92 | 87 |
| 예리태양광발전소 |
|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6호㈜ | 안동1호망호리태양광발전소 | 1,873.0 | 55 | 52 |
|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0호㈜ | 산청하이일호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 2,403.0 | 56 | 53 |
|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1호㈜ | 산청하이이호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 2,403.0 | 56 | 53 |
|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2호㈜ | 산청하이오호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 2,433.0 | 57 | 53 |
|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3호㈜ | 산청하이육호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 2,416.0 | 57 | 53 |
|  | 센트럴태양광발전소4호㈜ | ㈜현대태양광 | 3,220.0 | 103 | 97 |
| 정선하늘5호 태양광발전소 |
|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4호㈜ | 금성 태양광발전소 | 2,031.0 | 58 | 54 |
|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5호㈜ | ㈜혜성에너지 | 2,244.0 | 49 | 46 |
|  | ㈜아침태양광6호 | 아침태양광6호 태양광발전소 | 3,047.0 | 101 | 95 |
|  | 센트럴태양광발전소5호㈜ | 정선하늘6호 태양광발전소 | 1,676.0 | 58 | 55 |
|  | 센트럴태양광발전소6호㈜ | 소나무1 태양광발전소 | 2,036.0 | 60 | 56 |
|  | 센트럴태양광발전소19호㈜ | 소나무2 태양광발전소 | 1,542.0 | 51 | 48 |
|  | ㈜다랑쉬태양광 | 다랑쉬 태양광발전소 | 1,858.0 | 62 | 58 |
|  | 센트럴태양광발전소1호㈜ | 황제태양광발전소 | 1,942.0 | 63 | 60 |
| 황제1태양광발전소 |
|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호㈜ | 대길태양광발전소 | 1,942.0 | 63 | 60 |
| 대길2태양광발전소 |
|  | ㈜도화 | 도화 태양광발전소 | 1,926.0 | 63 | 60 |
|  | ㈜지보에너지 | 지보 태양광발전소 | 929.0 | 31 | 30 |
|  | ㈜보문에너지 | 주식회사 보문에너지 | 1,926.0 | 63 | 60 |

**대출약정금 및 대수선비적립금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솔라다이렉트 ㈜ | 솔라다이렉트1호 태양광발전소 | 343.0 | 14 | 13 |
|  | 채움쏠라㈜ | 채움쏠라1호 태양광발전소 | 1,917.0 | 64 | 60 |
|  | 피씨솔라㈜ | 평창회동1호 태양광발전소 | 1,620.0 | 65 | 61 |
|  | 회동에너지㈜ | 회동에너지1호 태양광발전소 | 1,075.0 | 42 | 40 |
|  | 제이에이치에너지㈜ | 제이에이치에너지2호 태양광발전소 | 1,869.0 | 72 | 67 |
| 제이에이치에너지1호 태양광발전소 |
|  | 대성쏠라㈜ | 대성쏠라 태양광발전소 | 1,689.0 | 66 | 62 |
|  | 더드림에너지㈜ | 더드림에너지 태양광발전소 | 1,323.0 | 51 | 48 |
|  | ㈜제이씨엠에너지 | 제이씨엠에너지 태양광발전소 | 1,293.0 | 51 | 48 |
|  | 비오엠쏠라㈜ | 비오엠쏠라 태양광발전소 | 1,931.0 | 66 | 62 |
|  | 우성에너지㈜ | 우성에너지 태양광발전소 | 1,250.0 | 43 | 41 |
|  | 강원발전㈜ | 강원발전 태양광발전소 | 5,666.0 | 198 | 186 |
|  | 에스발전㈜ | 에스발전 태양광발전소 | 5,606.0 | 198 | 186 |
|  | 케이발전㈜ | 케이발전 태양광발전소 | 5,687.0 | 198 | 186 |
|  | 영동발전㈜ | 영동발전 태양광발전소 | 1,877.0 | 66 | 62 |
|  | 솔라나인㈜ | 길탕1호 태양광발전소 | 4,223.0 | 123 | 116 |
|  | 솔라원㈜ | 길탕2호 태양광발전소 | 4,222.0 | 123 | 116 |
| **합 계** | | | **83,100.0** | **2,638** | **2,484** |

**별첨 가**

**관리운영위수탁계약**

(뒷장에 별첨)